ITF 수산분과

ITF 수산 정책

2025년호

2024년 10월
제46차 ITF 총회에서 채택된
ITF 수산 정책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은 민주적이고 가맹조직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연맹으로, 147개국 670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운수 부문에서 1,800만 명 이상의 여성 및 남성 노동자를 대표한다. ITF는 운수노동자들의 권리와 평등, 정의를 위한 캠페인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WWW.ITFGLOBAL.ORG

목차

제1장 도입 **5**
- **도입** **6**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6
  - 국제 규제 체계 7
  - ITF의 역할 8
  - 본 문서를 사용하는 방법 8
- **원칙의 서술** **9**
- **목적의 서술** **10**

제2장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수산업 관리 **11**
- **핵심 메시지** **12**
- **지속 가능한 수산업** **13**
  - 수산업 관리 14
  - 배타적경제수역(EEZs) 15
  - 권리 기반 관리 15
  - 어획 능력 관리 16
  - 보조금 16
  - IUU 어업 근절 17
- **환경 보호와 인식** **18**
  - 해양 공간 계획 18
  - 해양보호구역 18
  - 어구 선택성 19
  - 해양 오염과 환경 19
  - 기후 변화와 공정한 전환 19
- **국제 규제 체계** **21**
  -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 강령(CCRF), 1995년 21
  - FAO 항만국조치협정(PSMA) 21
  - 지역수산업관리기구(RFMOs) 22

제3장 노동조건과 사회적 차원 **23**
- **핵심 메시지** **24**
- **인권 및 노동권** **26**
  - 기본 노동권 26
- **인권 실사 및 해산물 공급망** **27**
  - 수산업에서의 노예제와 강제 노동 28
- **노동 조건** **30**
- **ILO 어선원노동협약, 제188호, 2007년 (ILO C188)** **31**
- **고용 조건** **33**
  - 선상 근무 기간 및 최대 해상 체류 시간 33
  - 보수 체계 33

직업 기회와 구조조정의 결과 34
산업안전보건 35
건강 검진 36
산업안전보건 정책 36
이주 어업인들의 채용 및 알선/보호 37
청년 어업인들과 수산업 분야의 아동 노동 방지 37
수산업 내 여성 37
제4장 안전 측면 39
핵심 메시지 40
어선 안전 41
국제 규제 체계 42
2012년 IMO 케이프타운 어선안전협정(CTA) 42
어선원 교육 및 자격증에 관한 IMO 협약(STCW-F), 1995년(개정본) 43
IMO 어업인 및 어선 안전 규정, 2005년 44
인력 배치(선상 선원 배치) 45
항만국 통제(PSC) 45
참관인의 안전 46
제5장 법규미준수선박(FONC) 제도와 ITF 시행 49
핵심 메시지 50
법규미준수선박(FONC) 52
ITF 적절한 조건의 이행 53
ITF 어선 선원 기본 CBA 54
목적 54
어업인의 월 최저 수용 가능 임금 54
임금 체계 55
정원 55
FONC 위원회 56
전 세계 및 지역별 어업인 지원 네트워크 56
제6장 어업인 조직, 캠페인, 소통 57
핵심 메시지 58
조직화 및 캠페인 59
어업인을 위한 글로벌 정의 59
어업인 주도 조직화 59
ITF는 가맹조직 중심의 60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조직화를 통한 전 세계적 진전 60
지원 네트워크 및 정책 이니셔티브 61
이주 어업인 조직화에 대한 헌신 61
조직화에 관한 집행 가능한 법적 권리 62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근거 62
다른 해운 및 식품 공급망 노동자들과의 연대 63
전략적 캠페인 63
어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 캠페인 및 협력 64
소통 원칙 64
외부 자금 조달/세계 및 지역 어업인 지원 기금 65
부록 추가 참고 자료 67

제1장 도입

도입

01.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은 세계 최고의 운수기관으로서 인정 받는 민주적이며 회원 주도적인 연맹이다. ITF는 소외될 수 있는 150여개국의 700개 이상의 가맹 노동조합을 연결시켜주고 조합원들이 권리와 평등, 정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우며,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전역의 약 1,650만 명의 남성 및 여성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이다.

02. ITF는 수산물 공급망의 일부로서 해상에서 일하는 어업인들을 대표한다. 우리는 규제 밖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혹독하고 억압적일 수 있는 산업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03. 수산업 부문은 복잡한 국제 공급망을 가진 글로벌 산업으로,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뿐 아니라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지역적 및 전국적으로 일련의 법적, 실질적 단계가 필요하다. ITF는 본 문서에 기재된 원칙에 따라, 어업인과 그들의 공동체, 해양 환경을 위해 국제 규정의 개발 및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04. 국제연합(UN)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2016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구성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17가지 목표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경제, 법률, 생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래에 나열된 8가지 SDGs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SDG 1 빈곤 퇴치**
- **SDG 2 기아 퇴치**
- **SDG 5 성평등**
- **SDG 8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
- **SDG 13 기후행동**
- **SDG 14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대양, 바다 및 해양 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한다**
- **SDG 16 평화, 정의 및 강력한 법규**
- **SDG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국제 규제 체계

05.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노동기구(ILO), 식량농업기구(FAO)는 책임 있는 수산업과,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 수산업 현장의 적절한 노동 및 생활 여건을 위한 강력한 법적 체계를 제공하는 다양한 국제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했다. ITF는 이러한 국제 규정의 개발과 비준, 그리고 그에 따른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06. 그 일환으로, ITF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및 양식업에 관한 FAO 선언(COFI, 2021)'을 지지한다. "ILO 및 IMO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해당 분야의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공정한 노동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강제 노동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며, 어업인과 양식업 종사자 및 그 지역사회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해상 안전 개선 조치를 지원하며, 해당 분야의 모든 종사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07. ITF는 ILO 헌장에 따라, 각국이 성실하게 ILO 핵심 협약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에 관한 수정된 원칙들을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할 국가의 의무를 바탕으로 한 '직장 내 기본권 및 원칙에 관한 ILO 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8년(제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1949년(제98호)

    b.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철폐,
        - 강제노동협약, 1930년(제29호) (및 2014년 의정서)
        -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1957년(제105호)

    c.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철폐,
        - 최소연령협약, 1973 (제138호)
        -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에 관한 협약, 1999년(제182호)

    d.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 철폐.
        - 동일임금협약, 1951년(제100호)
        -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 1958년 (제111호)

    e.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 산업안전보건(OSH) 협약, 1981 (제155호)
        - 산업안전보건협약 이행 촉진 체계, 2006년(제187호)

08.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99조 (노예 운송 금지), ILO 어선원노동협약 제188호, 국제해사기구(IMO) 2012 케이프타운 어선 안전 협약, 식량농업기구(FAO) 항만국조치협정 (PSMA)은 세계 수산업에서 노동 조건 위반에 대처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ITF의 역할

09. ITF는 ILO와 협력하여 모든 어업인에게 양질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IMO와 협력하여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주관하는 FAO와도 협력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는 어업인 및 수산업 모두의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 ITF는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과,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산업은, 책임 있는 수산업에 관한 FAO 행동강령을 비롯한 기타 해당되는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유엔 2030 의제 및 관련 유엔 의제에 명시된대로, 그리고 환경, 사회, 경제적 (3가지 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본 문서를 사용하는 방법

11. 본 정책은 ITF의 전세계 가맹조직들과 상의하고 가맹조직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개발하였다. 본 정책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세계 수산업에 대한 ITF의 활동을 자리매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해상에서의 인권 및 노동권, 수산업 및 수산물 공급망 내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과 ITF의 역할과 관련된 특정 쟁점과 정책에 대해 기존 및 미래의 가맹조직들에게 안내하고 조언하는 것이다.

원칙의 서술

- ITF는 수산업과 수산물 공급망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 최상의 노동 및 사회적 기준을 시행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기준에는 국제 인권 및 기본 노동권과 국제 안전기준, 2007년 제정된 ILO 어선원노동협약 제188호(ILO C188)가 현재 뒷받침하는 국제 해상 노동기준이 포함된다.
- ITF는 어업인들을 위한 노동조합 권리를 촉진하고 지원하며, 어선 탑승 시 이러한 기준을 전면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 ITF는 수산업 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범위의 확대와, 전세계의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조합의 협력 및 협조를 지원한다.
- ITF는 운영비 최소화를 모색하는 소유주에 반대한다. 그 중에서도, 조세 회피, 노동조합 방지, 초저임금으로 인한 이주민 어업인 착취, 선원의 복지와 사회보장 미제공, 노동, 안전, 환경기준의 적절한 적용 회피를 반대한다. 이러한 쟁점은 종종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수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 ITF는 불공정 임금 경쟁에 반대한다.
- 어선 소유주는 탑승 노동자의 지속적인 훈련 및 경력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기여해야 한다.

목적의 서술

12. 이러한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ITF는 다음을 위해 캠페인한다.

- **선원의 고용조건을 보호 및 강화하고 모든 선원들은 인종, 국적, 이민 상태, 성별, 종교, 성적 기호 또는 성 정체성과 상관 없이 착취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함,**
- **수산업 내 기준 이하의 고용을 방지하고 가능한 모든 정치적, 산업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선박과 선원의 국적에 상관 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할 ITF 허용 기준을 모색함,**
- **전세계 캠페인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맹 노동조합을 강화함,**
- **2007 ILO 어선원노동협약 제188호(C188)의 보편적인 비준과 실질적 이행을 달성함,**
- **수산업의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정부 간 기구에 압력을 가함,**
- **어획 부문 참여자 및 수산물 공급망 참여자들과 다른 형태의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선박 소유주를 비롯한 사용자들과의 국제, 국가, 지역 및 현지 단체교섭에 참여하여 어업인들을 위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과 노동조건을 확보함,**
-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경우, 정치 활동과 노동쟁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5장에 명신된 바와 같이) 법규미준수선박(FONC)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기함,**
- **(ITF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착취를 철폐하고 모든 어업인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를 보장함.**

제2장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수산업 관리

핵심 메시지

- ITF는 지속 가능하고 예방적인 수산업 관리 조치를 지원한다. 주요 수산업 관리 목표(최대 지속 가능한 어획량(MSY) 목표)는 노동과 사회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ITF는 어획 능력을 사회적으로 공정한 방식으로 감소시키는 조치를 지지한다.
- ITF는 식량농업기구의 남획 방지, 유해한 보조금 축소, 무해한 보조금 장려,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증대, 소규모 어업인을 위한 자원 접근성 및 시장 접근성 보장을 지지한다.
- 폐선 계획은 공정한 전환의 원칙에 기반해야 하며, (선박 소유주 보상 외에) 노동자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 ITF는 어디에서 발생하든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수산업에 단호히 반대하며, 전세계 정부 기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 정부 간 기구, 비정부기구의 IUU 수산업에 맞선 조치를 지지한다.
- 어업권은 국가가 정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산업계에 배분되는 총 허용 어획량을 기준으로 국가 및 지역 수산업 공동체의 재산으로 남아야 한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잘 규제되고 통제되는 배타적경제수역(EEZs)일 것이다.
- ITF는 시장이 단독으로 수산업을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별 양도 가능 할당량(ITQ) 수산업 관리제도의 도입에 단호히 반대한다.
- ITF는 선택적이고 연료효율적인 어구 개발은 물론 어획 부문과 상의 하에 정한 해양보호구역(MPAs)을 지지한다.
- ITF는 노조와 어업인(또는 그 대표자들)이 지역수산업관리기구(RFMOs)의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후 변화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전과제와 위험요소를 반영한 어업인을 위한 공정한 전환은, 소득 보장 및 양질의 교육과 같은 사회 보장 조치뿐만 아니라,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요소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건 및 안전 조치까지 포괄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13. 세계의 어족 자원은 미래 세대를 포함한, 전 인류가 공유하는 천연 자원이다. 또한 이 자원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개별 연안 지역사회와 국가들에게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족 자원을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최대한의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활용하려면, 이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장 이용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 특히 연안국의 권리와 이익이 존중되어야 한다.

14. 해양 수산 자원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생물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어획되는 어종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남획은 식량 안보와 수산업 분야의 장기적인 고용은 물론, 해양의 건강과 회복력까지 위협하고 있다. 수산업의 강도를 제한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의 토대가 되며, 장기적으로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장한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은 전 세계 연안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에게 건강한 식량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와 어획 제한 (어획 할당량 및 활동량 관리 포함)의 이행이 필수적이다.

15. 수산업 분야에서 최대지속가능어획량 (MSY)은 무기한에 걸쳐 어류 또는 조개류 개체군에서 포획할 수 있는 최대 어획량(마리 수 또는 톤수)으로 정의된다.

16.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은 어족 자원을 최대지속가능어획량(MSY) 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어족 자원에 대해서는 현재 MSY 추정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데이터가 부족한 어종에 대한 수산업 관리 결정을 내릴 때는 예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수산업 관리를 위한 MSY 목표는 수산업 관리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측면을 평가하고 고려해야 한다.

17. ITF는 연안국 간의 협력과 데이터 수집, 수산업 관리 및 집행 분야를 포함한 지역 수산업 협정 또는 협약의 체결을 확고히 지지한다. 지역수산업관리기구(RFMOs)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와 그 대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ITF와 그 가맹조직은 모든 관련 RFMOs에서 대표한다.

18. ITF는 (지속 가능성 원칙, 예방 원칙 접근법, 수산업이과 어촌 지역사회 및 그들의 역사적·전통적 어업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수산업 협정을 채택하기 위해 UN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19. ITF는 국가와 연안 어촌 지역사회가 자국의 해양 생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산업 접근 협정의 단기적 거래를 UNCLOS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잉여로 간주한다. 협정에는 지역 수산업 지역사회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관련 지역 어업인과 육상 노동자 모두의 인권 및 노동조합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20. ITF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에 기여하는 네 가지 핵심 목표, 즉, 남획 근절, 유해한 보조금 축소,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증대, 그리고 소규모 어업인들의 자원 및 시장 접근 보장 등을 이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주관 기관으로서 FAO를 지원한다. ITF는 FAO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1]

21. 지속 가능한 수산업은 전 세계 연안 지역 사회와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건강한 식량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단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어족 자원, 적절한 관리, 그리고 어획 제한의 엄격한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용되는 어구의 총량을 제한할 수도 있고(수산업 노력량 관리, 즉 *투입* 통제), 어획량을 제한할 수도 있다 (어획량 관리, 즉 *산출* 통제).

수산업 관리

22. 수산업 자원은 적절히 관리된다면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 그러나 어획 압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러한 노력도 한계가 있는데, 어획 압력은 더 이상 경제성이 없어지거나 어족 자원이 붕괴될 때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산업 강도를 제한하는 것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장기적으로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보전 수단이다. 남획은 환경적 및 사회경제적 문제로, 식량 안보와 수산업 분야의 장기적 고용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먹이 사슬(및 더 넓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쳐 오염과 기후 변화 등 다른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약화시킨다.

23. 많은 어종이 여러 국가에 걸쳐 분포하거나 국경을 초월하여 서식하고 있으므로, ITF는 해당 국가들 간의 협력과 데이터 수집, 수산업 관리 및 집행 등을 포함하는 지역 수산업 협정 또는 협약의 체결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러한 지역 수산업 관리 기구들이 노동자와 그 대표자들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경을 초월하거나 대이동성 어종에 대한 효과적인 협정과 협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4. 항해 일수나 어구 사용 제한과 같은 규제 조치들은 이러한 제도가 과도한 노동시간과 사고 및 사망 사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사회적 조건과 복지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해상 체류 시스템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ITF는 이러한 시스템이 노동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고 위험을 높일 경우, 그 사용에 반대한다.

1 FAO(2020)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포획 수산업 생산량은 9,640만 톤이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산업 자원 남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내의 주요 어류 서식지, 산란지 또는 산란기, 그리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업의 공간적 및 시간적 관리(특정 어구 사용 금지 구역 지정 또는 연중 특정 기간의 수산업 금지 등)는 필수적이며, 투명한 공동 관리 절차를 통해 수산업계와 협력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26. 수산업 관리 비용과 데이터 수집은 공공 자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수산업계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어선 활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어획량 및 상륙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과학적 데이터 수집 비용에 기여해야 한다.

배타적경제수역 (EEZS)

27. 최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채택과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 그리고 연안국들이 자국의 수산업 산업을 발전시켜 나감에 따라, 전통적인 수산업 국가들의 어선들이 해양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과거 수공업적 또는 자급형 수산업이었던 많은 수산업 활동이, 규모는 여전히 작더라도, 점차 산업화되고 있다. 이러한 연안 국가들이 자체 수산업을 육성함에 따라 원양 어선단의 활동 기회는 계속 줄어들겠지만, 그로 인한 생산 과잉으로 남획의 위험은 커질 것이다. EEZ 설정은 개인 소유권, 지역사회 소유권 또는 국가 소유권 등 소유권에 기반한 수산업 관리 정책의 수립을 촉진한다.

28. 수산업 관리 체계는 어업권이 국가의 소유로 남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수산업영토이용권(TURF)이 부여되는 지역 어촌 지역사회가 일정 부분 이를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잘 규제되고 통제되는 배타적경제수역(EEZs)일 것이다. 이 체계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연안국이 소유하는, 국가 할당량 또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할당량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관리 체계는 부수어획을 줄이고 최소화하며, 해상 어류 투기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권리 기반 관리

29. 수산업은 공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공공 자원이며, 단순히 시장 원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개별양도가능할당량(ITQ) 제도는 공공의 이익, 주로 자원 보전을 대가로 공공 자원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을 부여하지만, ITQ 제도는 종종 소유권의 집중을 초래하는 동시에 신규 진입자에게 진입 장벽을 형성하기도 한다. ITF는 시장이 단독으로 수산업을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ITQ 수산업 관리 체계 도입에 단호히 반대한다.

어획 능력 관리

30. ITF는 세계 어선단의 규모는 어족 자원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선의 평균 수명이 최고 20~30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어획 능력을 줄이기 위해 선박 퇴역 및 영구적 어업 중단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전반적인 방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각 어업 분야의 어획 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획 능력 감축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과잉 어획 능력을 줄이는 데 있어 선박 퇴역이 유일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면, 이러한 퇴역 방안은 공정한 전환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주들에 대한 보상만을 위해 노동자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동자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재교육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보상이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총톤수(GT) 규제를 통한 선박 적재량 감축과 관련하여, 이러한 적재량 산정 방식은 선내 승객 숙박시설이나 선원 숙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31. 또한 ITF는 어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규모의 경제와 최첨단 기술의 도입을 강조하는 현재의 경제적 논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신기술과 진화하는 기술이 고용 및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수산업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32. ITF는 장기적으로 수산업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모든 직접 보조금 (어업인의 생활과 노동조건 및 복지, 안전 증진을 유일한 목적과 효과로 하는 보조금은 제외)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해한 보조금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해한 직접 보조금이란 어업 능력을 증가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인 활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모든 보조금을 의미한다.

33. 산업 구조조정의 사회적 측면을 해결하거나(예: 조기 퇴직 제도의 마련 및 자금 지원, 또는 실질적인 대체 고용, 기술 및 훈련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보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관행, 기술 및 개선된 데이터 수집을 촉진하는 무해한 보조금은 장려되어야 한다. IUU 어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선박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선주들은 어떠한 보조금이나 공공 지원에서도 배제되어야 한다.

34. ITF는 과잉 생산 능력과 IUU어업에 기여하는 유해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폐지하겠다는 FAO의 목표를 지지한다.

IUU 어업 근절

35. IUU 어업은 시급히 필요한 다른 사회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세수에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다. IUU 어업:
    - IUU 어업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영위할 능력을 저해함;
    -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관리의 발전을 저해함;
    - 노동조합/ITF 가맹조직의 교섭 능력을 제한하고, 어업 회사들과 단체협약(CBA)을 체결하는 능력을 제한함;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식량 안보, 생계 및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함;
    - 남획과 더불어 선주들은 선원들의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운영비(예: 인건비, 식비, 구명 장비, 보험료 등)를 절감하려는 경향이 있다;
    - 강제 노동 및 현대판 노예제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초국가적 조직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을 제공하며, 글로벌 해양 안보에 위협이 됨;
    - 대개 취약한 이주 어업인들을 강압하여,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공범이 되도록 만드는 행위를 포함함.
36. ITF는 공해상에서든 연안국의 EEZ 내에서든 IUU 어업에 단호히 반대한다. ITF는 전 세계 정부와 지역어업관리기구(RFMOs), 정부 간 기구 및 비정부 기구의 IUU 어업 근절 활동을 지원한다.
37. 여기에는 불법·미보고·비규제 어업을 방지·억제·근절하기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FAO 협정(PSMA)의 이행 지원이 포함된다. PSMA는 2016년 6월에 발효되었으며, IUU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항구를 이용하고 어획물을 하역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유일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이다.
38. 또한 ITF는 해상 환적(어획물, 선원 또는 부품을 한 어선에서 다른 어선으로 옮기는 과정)은 선원들이 계약된 기간보다 더 오래 바다에 머물게 되어 건강과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IUU 어업 관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9.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에게 IUU 어업을 강요하는 선박 소유주들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환경 보호와 인식

해양 공간 계획

40. 현재 어업은 해상 및 연안 공간을 두고 풍력 발전 단지, 양식업, 해양 자재 채취, 연안 관광 및 개발 등 다른 분야와 경쟁하고 있다. 해양공간계획(MSP)과 관련된 이러한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관리나 계획 승인이 시행되기 전에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블루 이코노미' 분야의 신흥 산업들이 중요한 어장인 해양 지역의 공간과 접근성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큰 우려사항이다.

41. ITF는 수산업계와의 협의와 더불어 어장과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고려되고 적절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양보호구역

42. ITF는 필수적인 어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주요 상업 어종의 산란지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MPAs)의 지정 및 관리를 지원한다. 이러한 해양보호구역에는 최신 과학 정보와 수산업계의 참여 및 포용이 필요하다.

43. ITF는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관리나 집행 없이 단순히 지정되기만 하여 존재하는 '서류상 공원'을 지지하지 않는다. 해양보호구역이 효과적인 보전 수단이 되려면, 실질적인 보전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어업 및 양식업을 포함한, 이러한 현장의 활동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는 어업계와 협의하고, 모든 해양 이용자 및 시민 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어구 선택성

44. 어구 개량과 선별 기술은 원치 않는 어종의 어획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구 설계 및 개량 시험에 대한 투자와 산업계 및 과학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비표적 어종이나 해양 서식지에 미치는 어업의 부정적 영향과 외부효과를 줄일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45. ITF는 선별적 어구의 개발과, 특히 거북이, 상어, 고래류, 해조류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부수적 어획을 줄이고 이에 대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해양 오염과 환경

46. 건강한 해양 환경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회복력 있는 해양 서식지의 근간이다. 해양 오염은 최대한 줄여야 하며, 관광 및 양식업을 포함한 연안 지역 개발은 수산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47. 건강한 해양 환경의 유지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어류 및 조개류 개체군의 번식은 물론, 기능적이고 회복력 있는 해양 서식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48. 오염의 영향과, 이것이 어족의 번식 능력 및 생산성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 및 국가 차원의 해양 과학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이 분야에 대한 국제 및 국가 연구는 과학자들이 오염이 어족에 미치는 영향과, 공간적 관리 및 어획 할당량 추후 어업 관리 체제에 대해 보다 정확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할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기후 변화와 공정한 전환

49. 어업은 전 세계 식품 부문 온실가스 (GHG) 배출량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산업 분야의 탈탄소화가 필수적이다. 수산업 부문은 최소한 IMO의 2023년 온실가스 전략에 부합해야 하며, 이 전략은 해운업계가 2050년경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수준 대비) 30% 감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0. 수산업의 탈탄소화는 기후 변화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전과제와 위험요소를 포함하여 어업인들을 위한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기후 적응이란 변화하는 기상 패턴이 어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해수 온도 상승과 서식지 파괴로 인한 어족 자원 감소 위협, 빈번해진 폭풍이 어업인과 어업 장비, 그리고 항만과 같은 주요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기온 상승으로 인한 열 스트레스와 탈수 위험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기후 행동의 중요성과, 소득 보장 같은 사회 보장 및 보건·안전 조치를 포함한 어업인 지원에 관한 구체적 조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51. 또한 어업인들을 위한 공정한 전환은 암모니아, 수소, 전기 배터리 등 대체 연료와 에너지원으로 구동되는 저탄소 어선으로 수산업을 전환하는 것과 같은, 수산업 분야에 미치는 기후 변화 완화 조치의 영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수산업계는 선원들을 위한 공정한 전환 조치에 부합해야 하며, 여기에는 모든 어업인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지거나 육상 휴가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양질의 교육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건안전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52. 국내외 차원에서 취해야 할 정책 조치로는, 수산업 국가의 국가결정기여(NDC)에 수산업 부문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포함시키는 것과 화석 연료 보조금은 유해할 뿐만 아니라 IUU 어업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수산업 부문의 탄소 발자국에 미치는 피해에 일조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수산업 부문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체계를 도입하여 해당 부문의 업무 공식화를 도모하는 것이 포함된다.

국제 규제 체계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 강령(CCRF), 1995년

53.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 강령(CCRF)은 책임 있는 어업 관행과 양식업 발전을 위한 원칙 및 국제적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CCRF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수생 생물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체계 및 수단 등을 포함한 국내외 활동에 지침으로 사용된다. CCRF에는 모든 국가와 기국, 항만국, 시장 국가의 의무와, RFMOs의 역할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54. CCRF 제8조(어업 활동 관련)는 책임 있는 어업 관행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해상 안전과 수산업의 사회 보장 및 양질의 고용, 어업 기술, 수산업 금융 및 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어업 활동이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루고 있다.

FAO 항만국조치협정 (PSMA)

55. FAO 항만국조치협정(PSMA)은 IUU 어업을 방지하고 억제하며 근절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하는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이다. 이 조치의 주된 목적은 IUU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항구를 이용하거나 어획물을 하역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 협정은 다른 협약 및 수단들을 보완하며, 해양 생물 자원과 해양 생태계의 장기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수산업 규정들의 국제적 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지역수산업관리기구 (RFMOS)

56. 지역수산업관리기구(RFMOs)는 특정 지리적 영역 내의 어족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들로 구성된 국제 기구이다.

57. ITF는 RFMOs의 활동과 역할을 지지하되, 반드시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며, 과학적 한계를 존중하고 (MSY를 목표로 삼지 않음),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강력한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 RFMOs의 업무는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58. RFMOs는 책임 있는 수산업 관리 관행의 일환으로 어선 내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RFMOs는 강제 노동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ILO C188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ITF는 노조와 어업인(또는 그 대표자들)이 지역어업관리기구 (RFMOs)의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관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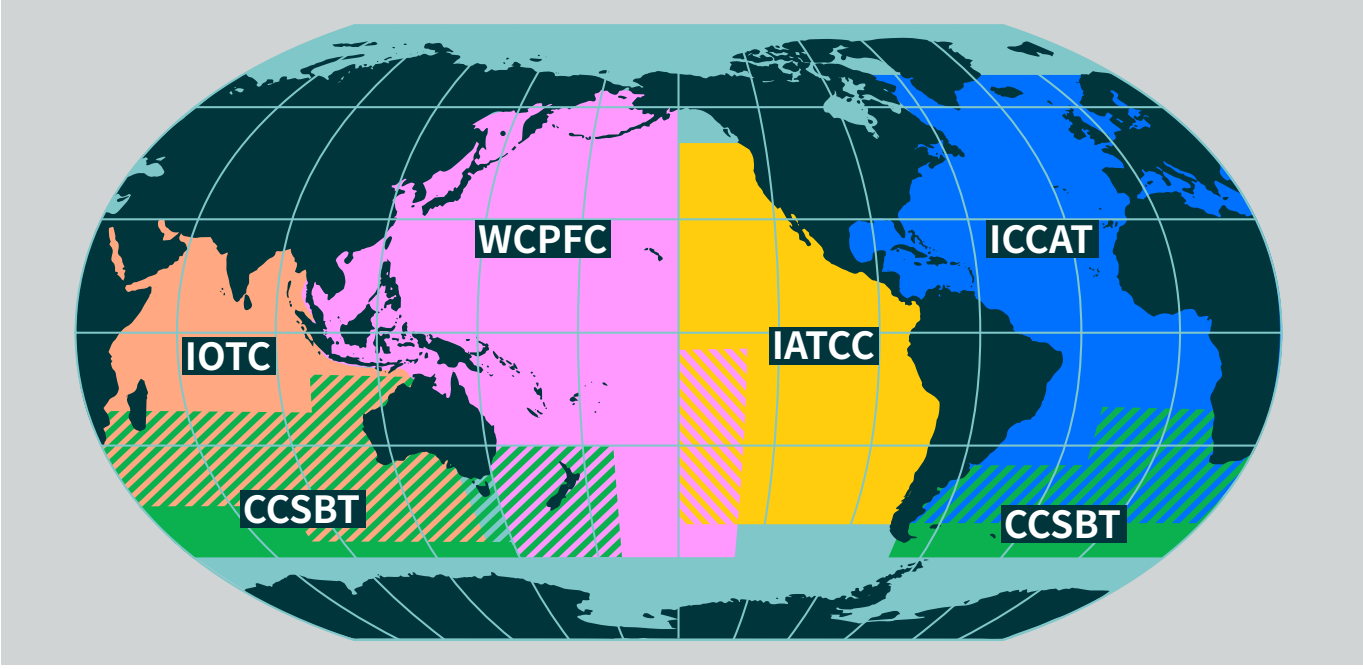

CCSB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IATCC: 전미열대참치위원회
ICCAT: 국제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OTC: 인도양참치위원회
WCPFC: 서·중부태평양수산업위원회

제3장
노동조건과 사회적 차원

핵심 메시지

- 수산업 부문은 복잡한 국제 공급망을 가진 글로벌 산업으로,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실질적 단계가 필요하다.
- ITF는 어업인과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 국제 규정의 개발 및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 ITF는 다음과 같은 ILO 핵심 협약의 주제인 기본권에 관한 원칙을 존중하고, 증진하고, 실현할 국가의 의무에 근거하여, 직장 내 기본권 및 원칙에 관한 ILO 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철폐,
  -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철폐,
  -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 철폐,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 ITF는 글로벌 공급망 최상위에 있는 선도 기업에게 어업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할 책임을 부여하는 기업책임법을 지지한다. ITF는 어업인과 노동자의 최고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는 인권실사(HRDD)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브랜드/선도 기업에 직접 관여할 것이다. 어업인의 관점과 어업인 노동조합의 관점은 기업의 사회적책임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 ITF는 강제 노동이나 인신매매와 관련된 수산물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데 기여하는 국내외 차원의 법안을 환영한다.
- ITF는 어업인들이 육상 노동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므로, 전세계에서 ILO C188의 비준 및 적절한 이행을 옹호한다.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ITF와 가맹조직들은 ILO C188 조항들이,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국가 법안으로 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ITF와 가맹조직은 국가 차원의 정책 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는 ILO의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주류화 툴킷'을 지지한다. 수산업 내 양질의 일자리 확보는 국제 기준과 기업 의제뿐 아니라 어업인과 이들을 대변하는 조직들의 관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ITF는 해양에서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ILO C188에 따라 외국 어선을 감독하는 것을 포함하여 항만국 통제체계의 이행을 옹호한다. 노동조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에 의해 채택되어, ILO C188 및 기타 관련 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산업 관리를 담당하는 RFMOs와 안전 및 노동 문제와 관련해 선박을 검사하는 항만국 간에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데이터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어업인들의 노동조건은, 수산업에 적용되는 특수한 조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상선 내 노동조건(MLC, 2006)에 필적해야 한다.
- 어선원의 노동조건은 일반적으로 선주와 해당 어선원 노동조합 간의 단체 협약 및 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ILO가 채택한 핵심 노동 기준을 충족하고, ILO의 '양질의 일자리 프로그램', ILO 제188호 협약 및 기타 국제 조약과 기준에 명시된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 국가별 노동시장 조건과 관습에 따라 국내법은 해당 협약에 명시된 조건을 보완해야 한다.
- **어업인들의 안전문화 개발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우선과제여야 한다.** 안전문화는 사회적, 노동조건을 포함한 모든 면에 대해 전체론적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인권 및 노동권

기본 노동권

59. 어업인들의 권리를 규정하는 여러 국제법적 문서가 있다. 이러한 규정 중 일부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각국 정부에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60.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다양한 인권 조약과 ILO의 협약 및 권고안 등 국제 노동 기준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ILO 협약을 포함한 여러 조약은 이를 비준한 모든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조약 당사국들이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개별 민원 처리 체계와 감독 기구가 포함된다.

61.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약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다. 이 규약들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평등, 차별 금지,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임금, 보건안전, 사회보장, 노동시간 제한 등 다양한 노동권과 보호 조치를 담고 있다.

62. 1998년, ILO는 '노동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이 선언에 따라 ILO 회원국들은 관련 협약을 비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네 가지 범주에 속하는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범주는 다음과 같다.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철폐,
    -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철폐,
    -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 철폐,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63.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은 직장 내 기본적인 원칙이자 권리이다. ILO는 2022년 6월 이를 다섯째 원칙으로 추가했다. 이는 산업보건안전을 더 이상 선택사항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산업보건안전에 대한 이러한 인권 중심적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

인권 실사 및 해산물 공급망

64.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은 인권실사(HRDD)를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식별, 예방 및 완화하고 책임'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HRDD는 해당 기업이나 부문의 규모와 범위에 맞춰, 그리고 관련된 위험의 심각성과 연계하여 각각의 인권에 대한 책임을 설명하고 입증하는 절차이다. HRDD는 기존의 기업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 초점은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아닌) 인력에 대한 리스크에 맞춰져있다.

65. ILO의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에 관한 3자 원칙 선언(MNE 선언)은 HRDD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 및 노동자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미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핵심적 역할은 물론, 노사 관계와 사회적 대화가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66. 기업의 실사와 현장의 고충 처리 체계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적절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활용하여 인권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창구는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하며, 특히 직장 내 국제적 원칙과 권리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67. 관련 국제 규정의 비준 및 효과적인 이행, 노동자 및 노동자 대표와의 적절한 협의,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 그리고 국가, 부문, 항만, 선단, 선박 또는 기업 차원에서 단체협약(CBA)의 이행은 모두 ILO C188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자발적 기준을 통해 회피할 수 없는 사항들이다.

68. 자발적 기준의 효과나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기준은 기업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인권을 보호하거나, 생존자와 피해자에게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기업과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학습과 대화, 신뢰 구축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인권 보호를 위해 의존할 수 없고 공공 규제를 대체할 수도 없으며, 기업의 남용으로부터 권리 보유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없애지도 않는다.

69. 현대의 해산물 공급망은 복잡하며 여러 국가에 걸쳐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 때문에 주요 국제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친 노동 조건을 외면하려고 한다.

70. ITF는 자사의 공급망에서 착취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에게 강제하는 인권 실사 의무화 법안의 제정을 요구한다. ITF는 기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제도와 자발적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책임성이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산업에서의 노예제와 강제 노동

71. 특히 어업인들과 이주 어업인들은 중개인와 채용 기관에 속아 강압당하거나, 무력의 위협 또는 채무 노예 상태에 놓여 강제 선상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IUU 어업, 범죄,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자명하다. 훈련 부족, 미흡한 언어 능력, 그리고 안전 및 노동 기준에 대한 미흡한 시행은 이들 어업인들을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하게 만든다.

72. 강제 노동 사용 금지는 국제 인권법의 근본 원칙으로 널리 간주되며, 국제사회에서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ILO는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사회 정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왔다.

73. ILO 협약 제29호 제2조 1항에서 강제 노동은 “어떤 처벌의 위협 하에 어떤 사람에게 강요되는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로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된다. 강제 노동의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ILO의 감독 체계를 통해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수산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74. 예를 들어, **처벌의 위협에는** 형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강압, 신분증 압수, 권리 및 특권 상실과 같은 다른 형태의 강압도 포함된다. 다른 처벌에는 채무와 관련된 경제적 처벌을 포함한 금전적 처벌이 포함될 수 있다.

75. **자발적 제안이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고용 관계를 체결할 때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하고, 그 관계를 떠날 자유가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자의 자유를 방해하는 외부 제약이나 간접적 강압에는 노동자가 기만이나 허위 약속에 의해 유인되거나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지도록 강요받는 상황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또한 ILO는 기만과 사기를 통해 동의를 얻은 경우 최초 동의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제공의 자발성은 법적, 물리적 또는 심리적 강압과 같은 후속 사건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다. 노동자의 자유로운 고용 선택권은 절대적이며, 자발적인 고용이라 할지라도 퇴직을 제한하는 것은 강제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76. ILO의 강제노동 지표는 강제노동 상황의 가장 일반적인 징후를 나타내며, 여기에는 취약성 악용, 열악한 노동 및 생활 조건, 과도한 초과 근무 등이 포함된다.

77. 2014년, ILO는 제29호 협약에 대한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강제 노동 의정서로 알려져있다. 협약과 마찬가지로, 이 의정서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국가들이 보호, 예방 및 보상에 중점을 둠으로써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이 협약 채택 이후 나타난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강제 노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사업 모델과 관행,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78. 인신매매의 정의는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완하는,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에 관한 유엔 의정서(2000년 유엔 의정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3조 (a)항은 인신매매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79. **행위:** 사람의 채용,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수용.

80. **의미:** 금지된 행위 중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즉, 위협이나 폭력 또는 기타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 권력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을 지배하는 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금전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81. **목적:** 위와 같은 수단을 이용한, 이 행위가 착취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 유엔 의정서는 '착취'란 ' 최소한 타인의 매춘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 노동 또는 서비스,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 적출'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82. ILO는 2007년 일반 조사에서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83.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99조(노예 수송 금지), 제188호 ILO 어선원노동협약, IMO 2012 원양 어선의 안전을 위한 케이프타운 협정, 그리고 FAO 항만국조치협정(PSMA)은 전 세계 수산업에서 강제 노동을 식별하고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노동 조건

84. 어업인의 노동 조건은 다른 연안 산업과 동일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며, 수산업에 적용되는 특수한 조건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상선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유사해야 한다.

85. 어업인들의 노동 조건은 선주 및 해당 어업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과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ILO가 채택한 핵심 노동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ILO의 양질의 노동 프로그램, ILO C188, 기타 국제 조약 및 기준에 명시된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국가법은, 각국의 노동시장 전통과 관습에 따라, 이러한 협약에 명시된 조건을 보완해야 한다.

86. 어업은 힘들고 고된 직업이므로, 육상 노동자들이 갖는 퇴직연금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조기 퇴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87. ILO C188은 전 세계 어업계의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협약의 시급한 비준 및 이행, 적절한 통제 및 국제 기준의 향상은 노동조합 운동의 최우선 과제이며, ITF와 가맹조직들은 각국 정부 또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해야 한다. ILO C188은 최소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최소 기준을 넘어서 어업인들의 노동권 존중과 안전을 존중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88. ITF 정책은 수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란 수산업 자원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에게 안전한 작업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ITF는 모든 해양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은 어업인들이 양질의 조건 하에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공급과 연안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

ILO 어선원노동협약, 제188호, 2007년 (ILO C188)

89. ILO C188은 유엔의 세 가지 주요 국제 규정 중 하나이다. 나머지 두 가지는 IMO가 채택한 어선 안전에 관한 케이프타운 협정과 전 세계 불법 및 비규제 어업 퇴치를 위한 FAO 의 항만국조치협정(PSMA)이다. 또 다른 주요 규정은 IMO의 어선원 교육, 자격증 및 당직근무기준에 관한 국제 협약, 1995년(STCW-F)이다.

90. ILO C188은 2017년 11월에 발효되었으며, 전 세계 어업인들이 보건안전을 포함한 양질의 노동 및 생활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협약은 사용자의 기본 의무 체계와 정부가 최소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하는 해당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ILO C188 협약은 모든 어업인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고용 조건과 양질의 숙소 및 식사, 의료 서비스, 규정된 노동시간, 본국 송환, 사회 보장, 선상 보건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91. 어업인에게 있어 기국과 연안국 모두의 ILO C188의 비준 및 이행은 시급한 과제이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남녀는 약 4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매우 위험하고 대부분 규제가 없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ITF는 어업인들이 해상 어업 활동 기간뿐 아니라 은퇴 후에도 육상 노동자들과 동등한 대우(노동 환경, 사회 및 건강 보호 등)를 받아야 하므로, ILO 어업 부문별 권고안 C188 및 ILO 어업 노동 권고안 199의 전 세계적인 비준 및 완전하고 적절한 이행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92. ILO C188은 대표권, 단체교섭권, 안전한 노동 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요건을 담고 있다. ILO C188은 어업 노동조합과 ITF 가맹조직들에게 어업인 보호를 위해 싸워야 할 최소한의 원칙들을 제시했다. 이는 업계를 더욱 규제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 협약이 없다면, 수많은 어업인들은 눈에 띄지 않고 취약한 상태로 남아, 지속적인 착취에 노출될 것이다.

93. 이 협약은 특별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째:
    -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 7일 넘게 해상에 머무르는 선박;
    -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상 떨어진 거리를 항해하는 선박;
    - 대륙붕의 바깥쪽 경계를 넘어 항해하는 선박;
    - 이러한 선박에서 일하는 어업인들.
94. 둘째, 다른 모든 어선과 그 선박에서 일하는 어업인들을 포괄하기 위하여.
95. 국가 당국은 ILO C188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 어선 소유주와 선장의 어업인 및 어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 어선 승선 근무 최소 연령을 설정함;
    - 모든 어업인는 어선 근무 적합성을 증명하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함;
    - 어선은 충분하고 효율적인 인력(선원)을 확보하고 유능한 선장의 지속적인 통제 하에 있도록 의무화함;
    - 어선에 승선한 어업인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보장함;
    - 어선은 선원 명단을 비치하고 모든 승선 어업인은 서명된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함;
    - 노동계약이 만료되면 어업인은 본국으로 송환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 어업인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선불금을 지불하거나 임금에서 채용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
    - 어업인들이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용 및 알선서비스 업체가 사용하는 구조나 목록을 금지함;
    - 운영을 허가 받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민간 채용 및 알선 서비스와 민간 고용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통제를 의무화함;
    - 어업인들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논의함;
    - 선상 거주 시설 및 식사에 대한 상세한 최소 기준을 설정함;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최소 요건을 확립함;
    - 어선 내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함;
    - 어업인들이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96. ILO C188은 어업인을 국가 시스템에 점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다루는데, 이는 이전 기준(ILO C102 - 사회 보장(최저 기준) 협약)에서 선원과 어업인을 사회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조치이다.

고용 조건

선상 근무 기간 및 최대 해상 체류 시간

97. 어업인은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고용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98. 어업인은 최대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해야 하며, 업무 편의를 위해 해당 기간은 9개월까지 연장되거나 7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

99. 해상에서의 단일 항해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어업인의 휴식 및/또는 휴양을 위한 기항을 제공해야 한다. 선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어업인의 휴식을 위한 기항에는 다른 이유(보급품, 연료, 음식 등)로 인한 기항도 포함될 수 있다.

100. 길이 45미터 이상이거나 총톤수 950톤 이상의 대형 어선은, 항구에 입항하기 전, 해상 체류 시간을 최대 3개월로 제한해야 한다.

101. 소형 선박의 경우, 항구에 입항하기 전 해상 체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길이가 24~45미터이거나 총톤수가 300~950톤인 어선에 대해서는 2개월의 운항 기간이 적용됨;
- 길이가 24미터 이상이거나 총톤수가 100~300톤인 어선에 한해 한 달의 운항 기간이 허용됨.

보수 체계

102. 전통적으로 어업인의 수입은 어획물과 어획물 판매로 인한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안전하지 않은 수산업 관행과 가용 어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103. 이러한 '어획량 배분' 제도는 매월 고정된 최저 보장 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개혁해야 하며, 단체 협약에 따라 (어획량 가치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성과급 제도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4. 월 고정 최저 보장 임금 체계 방식이 채택된 경우, 협상된 고정 급여는 '어획물 지분' 또는 '상여' 체계에서 사용되는 최저 보장 임금을 초과해야 하며, 해당 체계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어업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배분 전 공제되는 모든 경비를 명시해야 한다.

105. '어획물의 지분' 기반 보수 체계가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공정하고 투명함;
- 시장에서 어획물에 대해 가능한 최고의 가격을 보장함;
- 어획물 분배의 지분에 포함될 어업인 멤버수를 정함;
- 어획물 지분 비율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한다;

- 어업인 간의 공정한 비율 분배, 그리고 어업인과 선주/선박 간의 명확한 지분 분배를 보장함;
- 지분이 할당되기 전에 공제할 비용을 지정함;
- 미결제 금액을 수령하는 기간을 명확하게 정함;
- 어업인들이 자신의 몫이 산정되는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직업 기회와 구조조정의 결과

106. 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수산업을 떠나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여기에는 대체 교육 및 고용 기회 제공은 물론, 어업인 개개인 및 지역 사회 차원에서 어업인들에게 적합한 대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포함된다.

107. 구조조정 과정은 공정한 전환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조기 퇴직 제도의 마련 및 자금 지원과 더불어 어업인들이 의미 있는 대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08. ITF는 일부 어족의 회복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단기적 조정 조치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 자원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향후 해당 어족 자원이 회복될 때를 대비해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109. 수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업계를 영구적으로 떠나야 할 수도 있는 노동자을 위해 다음 사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난민 어업인들을 위한 대체 교육 및 고용 기회에는 선원, 수산업 감시, 데이터 수집, 수산업 관리 등의 직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어업인들을 위한 대체 일자리 창출. 관광이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지만, 사실 적절하지 않다. 해상 어업에 의존하는 많은 지역에서는 관광업을 육성할 기회가 제한적이며, 관광업은 대개 비정규적이고 저임금의 일자리만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 어촌 지역사회를 위한 대안적이고 적절한 고용 기회를 마련하는 것;
- 어업인들은 남획이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 때문에 FONC 어업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이는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수산업 체제 구축을 향한 노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

11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은 직장 내 기본적인 원칙이자 권리이다. ILO는 2022년 6월 이를 다섯째 원칙으로 추가했다. 이는 산업보건안전을 더 이상 선택사항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산업보건안전에 대한 이러한 인권 중심적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

111.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은 현재 기본 협약으로 간주되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협약(제155호) 및 2006년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협약(제187호)의 주요 내용이다. 이 협약들은 위험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활동 분야와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범위의 조항을 담고 있으며, 다른 구체적인 ILO 협약에 명시된 안전 및 보건 조치의 기초가 된다. 어업 작업이 종종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특히 배려해야 하며, 특히 그들이 해당 업무에 신체적으로 적합한지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2. 어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종 중 하나이며, ILO에 의해 공식적으로 위험 산업으로 지정되었다. 매년 수천 명의 어업인이 목숨을 잃어 큰 슬픔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종종 유가족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한다. 어업 활동의 특성 자체가 어업인들에게 발생하는 수많은 부상과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113. 어업인들의 안전문화 개발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우선과제여야 한다. 안전문화는 규제만으로는 조성될 수 없으며, 사회 및 노동 조건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위험한 관행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할 수 있고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14. 어선은 어업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직업병과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장비를 갖춰야 한다. 어업 분야에 적합한 기술 표준을 채택하고, 다양한 종류의 어구 사용 요건 및 선상 작업 절차(예: 작업 방식)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인적 요인 및 이것이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115. 어선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피로이다. 따라서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박의 안전한 항해 및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 활동 지역과 어업 유형을 고려하여 어선 승선 인원 기준은 국가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

건강 검진

116. 어업인들은 다른 선원들에게 미칠 위험을 줄이고, 어선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며, 환경 및 항해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117. ILO 제188호 협약과 IMO 1995년 STCW-F 협약은 어업인들이 건강진단서를 소지할 것을 의무화하며, 기록해야 할 정보를 상세히 규정하고 평가가 필요한 특정 건강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118. IMO와 ILO는 2024년 2월에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이는 제188호 협약 및 1995년 STCW-F 협약의 요건에 따라 어업인들에게 적용된다.

119. 이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01. 제188호 협약의 서문에 개괄된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함;

    02. 해상 인명 안전 및 해양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어선 승선 어업인들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적합해야 함;

    03. 어업인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고려할 때, 건강진단서는 어업인들의 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

120. ILO C188은 어업인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성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명서 없이 어선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소형 선박에서 작업하는 어업인이나 단기간 항해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관할당국이 이 요건을 적용하는 데 있어 약간의 유연성을 부여하며, 각국이 특정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특정 선박에 대해 이 요건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정책

121. 2014년에 ITF 수산분과는 상세하고 포괄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채택했다. 본 정책의 목적은 ITF 수산업 가맹조직과, 그 산하 노조 대표, 대표단, 조합원들에게 어선에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수산업 전반에 안전 문화를 조성함;
    - 어선 승선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인들의 사고와 질병, 기타 유해한 건강 영향을 예방함;
    - 정부, 어선 소유주, 어업인 및 그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가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보장함;
    - 어선 내 안전 및 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지역 및 회사 차원에서 정부 및 어업 사용자 단체와의 협의 및 협력을 증진함;
    - 어선 안전 및 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적절한 대표권을 확보함.

122. 이 정책은 ILO 제188호 어선원노동협약(2007)의 조항과 ILO 제199호 어선원 권고안(2007)에 제시된 조언, 그리고 ILO, IMO, FAO에서 발표한 어업인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타 관련 문서 및 지침을 고려하고 통합한다.

123. ITF 수산업안전보건 정책은 특정 보건 및 안전 문제를 다루는 14개의 장과 중요한 의료 문제를 다루는 6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 부록 두 개에는 국가적 차원과 ITF 내 모범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정책 전문은 이 문서의 부록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 어업인들의 채용 및 알선/보호

124. 소유주와 운영자는 최소한 인력 공급망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125. ITF는 수산업계에 책임감 있고 투명하며 독립적인 감사를 받는 인력 공급 업체들이 있어야 하며, 이들은 운영 및 채용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주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채무 노예나 강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공정한 임금을 받고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6. 보수 지급, 건강 검진 및 교육 준비와 같은 책임은 경우에 따라 C188의 제22조에 따라 국가 면허를 받은 인력 공급업체의 관할에 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ILO C188이 완전히 비준되고 시행되지 않는 한, 모든 노동 공급국이 반드시 이 협약의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 어업인들과 수산업 분야의 아동 노동 방지

127. 전 세계적으로 1억 6천만 명의 아동 노동자 중 약 70%가 농업 및 수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추정된다[2].

128. 본 정책에서 아동 노동은 ILO 제138호 최저 연령 관련 협약에 따라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도덕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노동 또는 아동의 의무 교육 이수를 막는 노동으로 정의된다.

129. ITF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 노동에 관한 관련 유엔 및 ILO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요구한다.

130. 특히 최소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TF는 원양 수산업 종사자의 최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수산업 내 여성

131. 여성들은 양식, 어획, 어획 전후 작업, 어구 수리, 판매, 그리고 내수역, 연안 및 원양에서 유급 및 무급 직책을 맡는 등 수산업의 모든 분야와 단계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 부문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 임금, 노동조건 또는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132. 여성이 수산업에 기여하는 바는 종종 인정받지 못하거나 간과되곤 한다. 특히 전통 수산업의 경우, 여성의 역할은 가사 노동의 일부로 간주되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133. 노동조합/가맹조직(단체협약 내에서)와 정부(정책 및 규제에 있어서)의 목표 지향적인 노력은 다음을 위해 필요하다.

    01. 수산업 내 여성들이 노동력 및 경제적 영향력 측면에서 현재 기여하고 있는 바를 인정하고, 공정/평등하며 정당한 대우를 요구함다.

    02. 여성이 수산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 다음을 위한 자금 조달 포함
      i. 교육
      ii. 경제/금융 프로그램의 활용 및 개발
    -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지원의 존재에 대한 인식
    - 지원 네트워크의 구축 및 참여.

2 FAO. 2021.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의 아동 노동 문제 해결. 배경 자료. 로마. https://doi.org/10.4060/cb7159en

03. 수산업 내 여성의 리더십 강화 차별과, 보이는 장벽과 보이지 않는 장벽을 극복하고, 여성 어업인들의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04. 여성의 의사결정 및 자원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참여.

05. 노동조건, 직장 내 여성 대상 폭력, 동일 임금 및 노동조건 등 여성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함.

06. STCW-F에서 요구하는 (이러닝을 통한) 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원양 어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

제4장
안전 측면

핵심 메시지

- 수산업은 사상율을 높은 산업으로, 가장 위험한 직종 중 하나이다.
- 어선 탑승 시 안전은 ITF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1995년 어선원 교육 및 자격증에 관한 IMO 협약(STCW-F)을 비롯한 여러 안전 이니셔티브 덕에 인명 피해는 감소했지만, 어업은 여전히 해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다.
- ITF는 해상에서 근무하기 전에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추는 것이 어업인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ITF는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기국 및 항만국 통제를 통해 IMO 케이프타운 협정 및 ILO 제188호 협약에 따른 안전 조치의 점검 및 이행을 강력히 지지한다.
- 항만국 통제조치는 상선 부문과 동일하게 어선에도 엄격하게 시행 및 적용되어야 한다.
- ITF는 어선 및 장비의 설계, 건조 및 통제와 어선 검사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이러한 협약에 따른 최소한의 국제 기준을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
- 어업 참관인은 해상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선에서 근무하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이다. 참관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위협이나 사건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선 안전

134. 어업은 사고율 및 사망률이 높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이다. FAO, ILO 및 IMO 에 따르면, 어업 부문의 연간 사망률은 어업인 10만 명당 80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시간당 4명의 어업인이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다.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어업인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으며, 이는 어업인 가족과 선원, 어촌 공동체, 해상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5. 안전 및 노동조건은 수산업 관리와 수산업 자원의 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조업 규모는 확대되고, 이동 거리와 노동시간, 감수해야 할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이는 생계를 어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136. 많은 소규모 연안 어선들은 원양 조업에 적합하지 않지만, 외부 산업용 어선단이 연안 자원을 남획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어장 밖으로 더 멀리 나가 조업하게 된다.

137. 대형 산업용 어선은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바다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생활 및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관심을 안전 기준에 기울이지 않는다. 특히 야간 근무나 해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때, 생활 공간과 휴식 시간이 자주 제한받는다.

138. 전 세계적으로 어선원들의 산업보건안전 및 사고 예방 체계가 대체로 미흡하다. 선박이 IUU 어업에 연루될 경우, 선주들이 선원들의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경향이 있어 노동 및 복지 문제도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139.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업용 대체 연료의 촉진 및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대체 연료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노동자의 안전을 사후 고려사항이 아닌, 초기 단계부터 염두에 두고 개발해야 한다.

국제 규제 체계

2012년 IMO 케이프타운 어선안전협정(CTA)

140. IMO 케이프타운 협정(CTA)의 전반적인 목적은 어선 검사에 관한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어선의 설계와 건조, 어업 장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글로벌 최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어선 및 선원(참관인 포함)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CTA는 어선 내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CTA는 상선 분야를 다루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조항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41. CTA는 비준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및 자국 어선에 대해 승인된 안전 기준을 지지한다. 또한 CTA는 공해상 또는 다른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국가 선단에도 적용된다. 또한, CTA는 외국 어선에 대한 검사를 허용함으로써 해당 선박의 수산업 참관인과 선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준다.

142. CTA의 비준과 이행은 선원과 어업인 간의 안전 기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조치이다. 이 협약의 비준은 노동력 공급국 및 시장국뿐만 아니라 기국과 항만국, 연안국에게도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143. 기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검사 체계를 수입함으로써 기국과 항만국은 선주와 사관, 선원, 관련 단체(노동조합 및 노동자 단체 포함)가 이러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144. 연안국 및 노동력 공급국에게 있어 CTA의 비준과 이행은 선박에 승선한 자국민의 노동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과 수색 및 구조 활동 비용, 오염 위험을 줄여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145. CTA는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길이 24미터(또는 총톤수 300톤에 상당하는) 이상의 어선에 적용된다. 또한 CTA에는 어선(길이 24m 이상)의 설계, 건조 및 장비 기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선박이 방수 및 방풍 기능을 갖추고, 안정적이며 항해에 적합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기계 및 전기 기구에 관한 규정과 화재 위험 최소화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146. CTA의 조항 대부분은 신규 선박에 적용되지만, 일부 조항은 기존 선박에도 적용된다. 기국은 선박이 연안 수역 또는 해당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하는 경우 해당 선박을 면제할 수 있다.

147. CTA를 비준하면 선박 검사를 강화하여 IUU 어업을 적발, 예방 및 근절함으로써 IUU 어업 근절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CTA의 '최혜국 대우 금지' 조항은 비준국들에게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 어선을 검사할 권한을 부여한다. CTA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어선을 검사하는 것은 비준국들에게 중요한 지원이 되며, 어업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148. 선원 보호는 선상 구명 장비에 관한 요건과 더불어, 이 협정의 핵심 조항이다. 출항 전 선원이 비상 절차에 대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교육 및 안전 훈련에 따른 비상 절차와 기국 행정 당국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어선원 교육 및 자격증에 관한 IMO 협약(STCW-F), 1995년(개정본)

149. **어업인들이 해상 근무 전에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항이다.** STCW-F는 1995년 IMO에서 채택되었고, 2024년에 개정되었다. 이 협약은 모든 어선의 선원에게 적용되며, 외해 어선의 어선원뿐만 아니라 선체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및 주엔진 추진력이 750kW 이상인 어선의 선장 및 사관에 대한 상세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STCW-F는 어업의 특수성과 해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 인명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어선원에 대한 자격 요건 및 최소 교육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50. 어선원은 다음 분야에 대한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구명조끼 착용과, 상황에 따라 잠수복 착용을 포함한, 개인 생존 기술;
- 화재 예방 및 진화;
- 비상 절차;
- 초급 응급처치;
- 해양 오염 방지; 그리고
- 선박 내 사고 예방.

151. STCW-F에는 어선의 선장과 사관, 기관장, 무선통신사의 자격 인증에 관한 의무 조항과 더불어, 기본 안전 교육 및 당직 근무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국은 자국 항구에서만 출항하여 자국의 EEZ 내에서만 조업하는 선박 길이 45미터 미만 어선의 선원에 대해 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2. 어선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기술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이점은 치명적인 사고 발생 및 인명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데까지 이른다. 더 나아가, 어선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최소 교육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자격 요건의 통합을 도모하면,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들 간의 노동자 이동이 원활해져, 어업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어업 특유의 임금 체계에 내재된) 위험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할 현지 선원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주 어업인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잠재적 언어 장벽은 즉, 모든 선원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153. ITF는 STCW-F의 채택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이 협약의 비준 촉진 및 개정·갱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IMO 어업인 및 어선 안전 규정, 2005년

154. 어선 내 안전은 IMO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다. STCW-F 협약을 비롯한 여러 자발적 및 규제적 안전조치들이 인명 손실을 줄이기는 했지만, 어업은 여전히 해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다. IMO 안전 규정은 “어업인의 안전보건 관행(A부)”과 “어선의 구조 및 장비에 관한 안전보건 요건(B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155. **A부**에서는 관할 당국, 선장 및 선원의 의무와 책임을 설명하고, 어업 내 어업인의 교육, 훈련, 안전 의식, 건강 및 의료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모든 규모의 어선에 적용된다.

156. **B부는** 선박 길이 24m 이상의 어선 및 승선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어선의 설계, 건조 및 선내 장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력 배치(선상 선원 배치)

157. 모든 기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어선의 선주가, 유능한 선장의 지휘 하에 선박의 안전한 항해와 조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외 없이, 자질을 갖춘 충분한 수의 선원을 승선시키도록 규정하는 법률, 규정 또는 기타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158. 또한, 선박 길이가 24m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 당국은 해당 선박의 항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승선 인원을 정하고, 필요한 어업인 수 및 그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을 명시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59. 기국은 민원 접수 및 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민원을 접수한 후 국가 당국이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적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민원은 어업인, 전문 단체, 협회, 노동조합 또는, 일반적으로, 선상 어업인의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위험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

160. 상담 및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한 전국 노동조합의 참여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는 데 있어 여전히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으며, 그 결과 어선 내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과 ITF 조사관 네트워크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국가 체계 내에서 이 약속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항만국 통제(PSC)

161. 항만국 통제조치는 상선 부문과 동일하게 어선에도 엄격하게 시행 및 적용되어야 한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MLC)에 따라 항만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항만국 통제 담당관을 위한 ILO C188 가이드라인, 그리고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의 대응 방식 또한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ITF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

162. 어선에 대한 항만국 통제를 효과적으로 확립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ITF를 비롯한 어업 분야의 많은 주체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통제는 국제 해상 무역 분야에서 선원들의 사회적 권리 보호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163. 실제로, 다양한 협정(파리 MOU, 도쿄 MOU, 미국 해안경비대 등)을 통해, 항만국 통제는 MLC 2006을 관련 법적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러한 2차 수단을 통해 국제 선원들의 노동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164. 실제로, 파리와 도쿄 MOU 부문에서 동시에 진행된 “MLC 2006” 표적 캠페인을 통해 수천 척의 상선이 표적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약 2%는 2006년 MLC 협약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억류 조치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MOU는 민원 처리 절차도 전면적으로 허용하며, 궁극적으로는 ITF와 같은 운영 경보 체제의 개입을 가능케 한다.

165. 반면, ILO C188과 같은 여러 국제법 체계가 이 MOU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 분야의 항만국 통제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거나 개발 및 시행의 초기

단계에 있음이 분명하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통제가 부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 점에서,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대해 SOLAS와 동등한 통합 안전 체계를 수립하고 유럽 각국의 인증 제도와 항만국 통제를 도입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97/70/EC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166. 공통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가 앞으로 몇 년 안에 긍정적인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가 있다. 실제로, 파리 MOU 지역은 도쿄 MOU 지역과 협력하여, ILO C188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어선에 적용될 항만국통제(PSC) 체제 구축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진전은 어선 선단의 현황을 반영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 다음으로 더 어려운 둘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어선 조사 제도에 특화된 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TF는 이 과정의 일환으로 유럽운수노동조합연맹(ETF)과 협력하여,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PSC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참관인의 안전

167. ILO C188은 상업적 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어업인과 모든 어선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어선 소유주는 선장이 이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선상 어업인들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선장에게 있다. 또한 '어업인'의 정의 범위에서 제외된 참관인 지위가, 특히 선상 안전 측면에서, 이 직종 내에서 특별하면서도 모호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68. 어업 참관인은 해상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선에서 근무하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이다. 참관인들은 부수어획량 기록과 같이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필수적인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169. 어선은 위험한 작업장일 수 있으며, 선박에 탑승한 참관인들은 구조되거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170. 참관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위협이나 사건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명확한 의사소통 경로와 비밀이 보장되는 신고 절차, 견고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71. 수산업 참관인들은 상업용 어선에서 어획량 및 부수어획량 데이터를 수집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참관인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생물학자로, 포획된 어류 및 기타 해양 생물에 관한 데이터와 함께,

투기 어획물의 종류와 양, 조업 위치, 사용된 어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한다. 참관인들이 수집한 정보는 어업 및 안전 규정 준수는 물론, 건전한 수산업 관리, 자원 보전의 토대가 되는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한다.

172. 어업 단속 활동에 자주 활용되기는 하지만, 어업 참관인의 주된 임무는 어족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필수적인 생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선상 어업 참관인은 어업 절차와 환경 지표에 대한 귀중한 관찰 자료를 제공한다.

173. 단속 활동이 추가되면 참관인와 선원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는 데이터 수집이라는 본래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

174.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지역 참관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참관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열리는 기회는 난민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경력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조 대표 기구를 조직할 계기가 될 수 있다.

175. 첫 단계로, ITF는 안전과 관련하여 그들의 역할과 그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명시한 헌장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을 전국 어업인 및 어선 소유주 연합회에 요청한다. 이를 위해, 해당 헌장 제정 시, 참관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승선 준비 절차를 추천해야 한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76. **탑승에 필요한 건강 상태:** 전문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직업의학과에서 실시하는 연례 건강검진에서 승선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177. **안전 장비 점검 의무:** 참관인이 선내 안전 장비(1인용 부양 장치 조끼, 생존복, 안전화, 헬멧 또는 모자)를 점검하는 것은 전적으로 참관인의 책임이다. 이상 징후나 의문점이 있을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해당 장비는 승인된 외부 기관에서 매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참관인은 담당 관리자에게 현행 절차와 점검의 올바른 수행 방법에 대해 문의할 것이다.

178. **날씨에 따른 승선 규정:** 선장이 승선을 허가할 경우, 최종 승선 여부는 참관인의 재량에 따른다. 그러나 바람이 너무 강하거나 파도가 너무 높을 경우, 안전과 수집된 데이터의 상태를 고려하여 참관인은 배에 승선해서는 안 된다. 참관인은 선장과 다른 승선 일정을 조율할 것이다. 승선 중 날씨가 악화될 경우, 참관인은 생물학적 관측보다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179. **선장과 함께 하는 안전 수칙:**: 승선하면, 참관인은 안전 공지를 요청할 것이다.

- 안전 장비(비콘, 구명 보트, 구명조끼, 소화기)의 위치;
- 위험 상황 발생 시 해야 할 일.

180. 이 헌장에는 참관인들이 선내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관인은 첫 승선 전에 인증서를 발급받는 해상 안전 교육을 포함한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안할 수 있다.

제5장
법규미준수선박(FONC) 제도와 ITF 시행

핵심 메시지

- ITF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목표로 삼는다. 노동자 목소리 및 노동자 단체 조직화와 관련된 권리는 ILO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 1948(No. 87)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1949(No. 98)을 통해 보호된다.
- ITF는, 국제적 또는 전국적으로 ITF가 승인한 단체교섭 협약(CBA) 또는 보다 나은 조건의 전국 CBA를 통해서만 어선 탑승 시 양질의 조건을 적절히 집행하고 이행하도록 보장하고 어업인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ITF는, 어업인들도 임금과 모든 노동조건을 담은 포괄적 단체교섭 협약의 적용을 받는 상선의 선원 동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어업인들은, 최소한, 숙련 선원(AB)을 위한 ILO 최저 기본임금 또는 기국의 최저임금 중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 국제운수노련이 승인한 단체교섭 협약이 있을 경우, 법규 FONC 신고 어선 탑승 시 임금은 상선에 탑승한 AB를 위한 ILO 최저 통합 임금에 대한 국제운수노련의 해석에 따르고/따르거나 이에 필적해야 한다.
-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려는 국제운수노련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전략은 필요 시 국제운수노련의 감독관 및 연락책을 수반한 단체교섭 협약 감독 및 집행을 통해 구축되어야 한다.
- 또한, FONC에 도전하는 ITF 캠페인 도입은 학대를 극복하고 어업인의 생계와 사회복지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 FONC 하에서는, 감시를 피하거나 어업권을 얻기 위해 깃발 변경이 가능하다. FONC 신고 국가는 등록소가 상업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자들은 국제적인 지속 가능성 노력과 IUU 어업 방지에 매우 비협조적인 깃발을 선택한다.

- ITF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국을 FONC라고 정의한다.
  - 기국이 IUU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지 않고 어업인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수익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깃발을 법규 미준수 신고로 간주할 것임,
  - 기국은 어업인들의 기본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지 않거나 못함,
  - 기국이 IUU 어업을 방지하지 못하면, 어업인들, 특히 이주 어업인들은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에 노출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함,
  - 선박의 수익적 소유권이 운항 중인 국기와 다른 국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국이 승선 어업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집행하지 않음,
  - 어선 탑승 임금이 AB를 위한 ILO 최저 기본임금 또는 기국의 최저임금보다 더 낮음.

법규미준수선박(FONC)

181. FONC는 선박 운영업체나 실질 소유주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편의치적선(FOC)과 유사하다. 선박은 게양하고 있는 국기의 국적을 가지며, 이는 채용된 선원들에게 (이들은 기국의 법률에 따라 생활하고 근무하기 때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182. ITF는 어떠한 이중 고용 체계도 반대하며, 원양어선단(DWF)의 99%에 대해 아직 체결되지 않은 ITF 협약의 체결을 지지한다. 국제법은 기국이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준을 집행하고, 해당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및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박과 그 선박이 게양하는 국기 사이에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선 운영업체가 규칙과 규정,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 국기를 선택해 등록한 경우, IUU 어업에 가담할 가능성도 더 높다. 실질적인 선박 소유주의 신원을 숨기는 방식과 수단은 IUU 어업을 가능케 한다.

183. FONC와 IUU 어업 간의 연관성은 명백하다. 이러한 공개 FONC 등록부를 운영하는 일부 국가들은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온 반면, 대다수의 국가는 불법으로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 기국이 통제할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국제 규범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있다. IUU 선박은 FONC 선박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는 FONC로 운영되는 많은 기국들이 감시 및 통제 역량이 부족하고 단속 인프라도 취약한 남반구 국가들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용이하고 적발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184. 기국이 어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 및 등록 측면에서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국이 어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은 정밀 조사를 피하기 위해 FONC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어획량을 모니터링하고 노동 기준이 준수되도록 보장하는 통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한, 해당 선박은 FONC 깃발을 게양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85. FOC 외에도, 어업 분야에서 FONC는 IUU 어업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운영업체에게 사실상 또다른 탈출구를 제공하게 된다. 이전에 규정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기국이 규정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선박 등록 제도를 개혁하더라도, '기국 이적(flag hop)'을 통해 문제를 다른 곳으로 전가할 수 있다. 기국, 연안국, 항만국 또는 시장국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조율된 대응을 펼치는 것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86. FONC 국가 내에 대표적인 사회적 동반자(예: 노동조합 또는 기타 노동자 단체)가 부재할 경우, 사회적 대화가 저지되고 양질의 일자리에 있어 심각한 결핍이 발생하며, 이는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 체계의 작동을 방해한다.

187.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 ITF는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국가 및 기업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등 협력을 통해 FONC 제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TF는 어업인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해상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 ITF는 정당한 어선 운영에 피해를 주면서 FONC 어선 운영이 누리고 있는 경쟁 우위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ITF 적절한 조건의 이행

188. 어선에서 적절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 요구되는 국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ITF는 개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ITF는 노동조건이 ITF가 승인한 CBA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및 해당 선박과 단체협약(CBA)의 조건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아래 요약 및 부록 2로 첨부된 - ITF 기본 협정);
- ITF 어업인지원네트워크는 인권 및 노동권이 침해당한 어업인들의 사례를 처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ITF는 전 세계 및 지역 단위의 어업인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는 어업인들이 근무하는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ITF 어선 선원 기본 CBA

목적

189. 이 기본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ILO C188의 적절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 FONC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용 어선에 적용하기 위해;
- FONC 어선에 승선한 어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 필요에 따라, 가맹조직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면서도 체계적인 CBA를 위한 간단한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 가맹조직들이 어선 소유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조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 ILO 규범에서 규정하는 수준보다 열악해서는 안 되는,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정책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IUU 어업 활동 근절에 활용될 조항을 제공하기 위해;
- (국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적용되는 기준이 더 낮은 기준이 아닌, 더 높은 기준을 따르도록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 조항;
- 제3자 감사 및 인증 제도가 어업인 및 그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인정된 협의 절차 또는 CBA의 대안으로 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0. CBA 본문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부록으로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임금표 및 그 구성 방식;
- 다양한 현금 급여를 정의함;
- 고충 처리 절차.

어업인의 월 최저 수용 가능 임금

191. ILO가 정한 선원(MLC에 따라 정의됨) 및 어업인(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최저 임금과 ITF 통합 임금 간에는 차이가 있다.

192. 어떤 제도를 채택하든, 어획량 배분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합의된 월 최저 보장 임금이 있어야 한다.

193. 상선 및 어선의 선내 최저임금 규정을 제정할 때는, 과거에 적용되었던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ILO가 권장하는 숙련 선원(AB)의 기본 최저임금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하다.

194. ILO가 권고하는 기본 최저임금은 1996년 ILO '선원의 임금, 노동시간 및 승선 인원 권고안'(제187호)의 조항에 근거하며, 이 권고안은 숙련 선원의 역월 1개월 근무에 대한 기본 급여 또는 임금이 해양 문제에 관하여 ILO 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양자 상설기구인 합동해사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195. 권고사항 자체에서 선원을 "항해하는 선박에 고용되거나 선박에서 어떤 직책으로든 종사하며 국가별 법률이나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그렇게 정의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협의를 거쳐 합의된 임금을 상업용 어선에 승선한 어업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임금 체계

196. 전통적으로 어업인의 수입은 어획물과 어획물 판매로 인한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선박의 과적과 선원들의 과로를 조장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조업 관행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197. 주식 기반 보상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어획물에 대해 가능한 최선의 가격을 보장하고, 어업인들이 고용계약서나 업무계약서(그리고 ILO C188에 따른 어업인노동협약 (FWA))에 명시된 대로, 자신의 소득이 산정되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8. 최저임금 보장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업인들에게 육상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199. 두 제도의 어떤 조합이든, 충분한 최저 소득을 보장하고, 어획량에 따른 보너스 산정 방식이 투명해야 한다.

200. 이 ITF 정책의 어떠한 내용도 국내법령에 따라 어업인들에게 이미 제공되고 있는 일반적인 보호 수준을 축소하거나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01. 이 정책은 어업인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어업인에게 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장려하거나 허용하는 어떠한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원

202. ITF가 승인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 FONC 선박의 승선 인원 기준은 본 정책의 부록 11에 명시된 ITF 승선 인원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ITF 가 승인한 협약이 적용되는 FONC 선박은 기국 인력배치인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에 제시된 인력운용 수준이 아니라 ITF 인력운용 수준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 소유권 및/또는 실질적 통제를 하는 국가의 가맹조직(들)이, 제안된 인력 수준이 자국 수준에 기반하고 허용 가능하다고 보증할 경우, ITF 인력운용 수준은 다양해질 수 있다.

FONC 위원회

203. ITF 협상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협상은 가맹조직들이 수행하고, ITF 사무국이 이를 조정하며, ITF 수산분과위원회가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며, ITF 조사단이 이를 집행한다.

204. ITF 수산분과위원회에 보고하는, FONC 위원회는 ITF FONC 캠페인의 운영 및 이행을 담당하고, ITF FONC 캠페인의 전략 수립과 장기적 지속 가능한 성공에 기여해야 한다.

전 세계 및 지역별 어업인 지원 네트워크

205. ITF는 FOC/POC 조사관 및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글로벌 팀을 운영하고 있다. ITF는 이 글로벌 팀의 중 일부를 선정하여, 어선 내 업무 관행 및 어업 활동과 어선 안전에 관한 관련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 이해가 필요한 수산업 문제, 조사, 사례들을 다루도록 했다.

206. 이 조사관들의 업무는 어업인들에게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ITF 어업인지원네트워크가 총괄하고 있다.

207. ITF는 전 세계 및 지역별 어업인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가맹조직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의 수산업 관련 현안을 다루고 있다.

제6장
어업인 조직, 캠페인, 소통

핵심 메시지

- ITF는 단체행동과 노동조합 조직을 통해 어업인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 ITF는 가맹조직 중심의 국제 노동조합연맹으로, 민주적인 노동조합 설립 및 재개와, 조직과 캠페인에 대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법을 가진 가맹조직을 지원한다.
- ITF는 어업인들이 지역 내 및 지역별 어업인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 전략적 지식을 비롯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대면 및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 및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 ITF는 수산물 공급망 전체에 걸친 지역별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력하는 ILO를 비롯한 단체들의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 우리는 전세계 어업인 연대의 비전과 업계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 어업인들을 집단 조직과 단체교섭 협약으로 조직하려는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한다.
- ITF는 조직화 노력을 지원하고 합동 지렛대를 개발하기 위해, 수산업 가맹조직들이 그 외의 해양, 물류, 수산업 관련 공급망 노동자들 및 노동조합들과 전국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권고한다.
- ITF는 기존의 수산업 가맹조직 및 조직 캠페인, 산업 파트너, 국제 기구, 공통의 명분을 지닌 그 외 조직들을 돕는 전략적 캠페인 활동에 전념한다.

조직화 및 캠페인

어업인을 위한 글로벌 정의

208. 우리의 목표는 어업 분야의 모든 노동자를 위해 노동 기준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이익에 의해 주도되는 수산물 공급망 내의 '바닥치기경쟁'을 막고자 한다. 기업들이 어업인들을 착취하고, 우리 해양을 훼손하며 취약한 어족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는 어업 방식을 동원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려 하므로, 우리는 모든 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어업인 운동을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 도전과제는 전 세계적인 것이므로, 전 세계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9. 효과적인 글로벌 운동을 위해서는 국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어업인들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비전은 어업인들이 어디에 살든,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모든 어업인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다. 우리는 한 국가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의 진전이 다른 국가에 거주하거나 다른 국가 출신 어업인들의 임금, 복지, 또는 고용 안정성 저하를 전제로 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어업인 주도 조직화

210. 우리는 어업이 모든 어업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생계 유지가 가능한 임금, 안전한 노동조건,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비전은 어업인들이 전국적, 지역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더 안전한 노동조건, 더 나은 임금과 복리후생, 더 강력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투쟁하여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세상이다.

211. 노동조합원으로서 우리는 단체행동과 노동조합 조직을 통해 어업인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업인들이 단결하고 조직화하면,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이 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업계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국제 노동조합 연맹으로서, 모든 차원에서 어업인들의 집단적 힘과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캠페인과 조직화 활동을 옹호하고, 지원하며, 조정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임을 잘 알고 있다[3].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www.justiceforfishers.org

3 www.justiceforfishers.org

212. 어업인을 위한 글로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ITF는, 적절한 경우, 다른 국제 노동조합 연맹, 업계 관계자, 시민사회 및 환경 단체, 국제기구, 정부, 기타 주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213. 어업인 주도의 조직화가 어업인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최고의 방법임을 인식하며, 우리는 어업인들이 전국적, 지역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각자의 네트워크와 노조를 통해 조직을 결성하고 캠페인을 펼치는 노력을 지지한다.

214. 우리는 다음을 통한 어업인 주도 조직화를 지지한다.

- 주로 ITF 수산분과를 통해, 기존 어업 노동조합(ITF 가맹조직)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를 표명하며, 서로에게서 배우고, 공동 캠페인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 각국 및 지역 간에 **어업인 주도 조직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을 확보하며, 홍보한다**.
- 어업인의 권리, 이익 및 복지를 증진하고; 어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또는 산업적 영향력을 창출하며; 어업인들의 산업적, 인권, 시민적 또는 정치적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사례를 부각시키는 **전략적 캠페인을 전개함**.
- 가맹조직과 산업 파트너, 국제기구, 공동의 목표를 가진 단체들 간에 **단체교섭 및 어업인 권리 관련 정책 이니셔티브를 지원함**.

ITF는 가맹조직 중심의

215. ITF는 가맹조직 중심의 국제 노동조합연맹으로, 민주적인 노동조합 설립 및 재개와, 조직과 캠페인에 대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법을 가진 가맹조직을 지원한다. 우리는 모든 회원의 이익을 위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연대를 실천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모색하는 가맹조직들을 지원한다. 우리는 어업인 노조와 사용자 간의 중앙, 부문별 및 전국 차원의 교섭을 장려한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조직화를 통한 전 세계적 진전

216. 어업인을 위한 정의라는 우리의 글로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 모두에서 조율된 조치가 필요하다. ITF 가맹 노조와 전국 노동조합센터들은 전국적인 조직률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노조 가입을 장려하고, (직장 내 및 산업 전반에 걸친) 조직화 캠페인을 전개하며, 산업 및 인구 통계학적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가맹조직들은 지역 문제에는 해당 지역에 맞춘 해결책이 필요하며, 해당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국가 및 전 세계 운동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ITF는 앞으로도 지역 차원의 조직화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4].

4 본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태국과 아일랜드, 서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이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2에 수록되어 있다.

지원 네트워크 및 정책 이니셔티브

217. ITF는 어업인들이 지역 내 및 지역별 어업인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 전략적 지식을 비롯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대면 및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 및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ITF는 국가, 지역 및 국제 당국과의 긍적적 협력을 통해 어업인들의 조직화, 보건 및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18. 또한, ITF는 수산업 가맹조직들과 협력하고 이들을 대변하여 국제 차원에서 긍정적인 정책 이니셔티브를 위한 활동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ILO C188과 FAO 항만국조치협정 (PSMA), 유엔 식량농업 정책 등을 비롯한 여러 정책의 개발과 채택을 지원해왔다. 국제 정책 이니셔티브는 국내 및 지역 차원의 직장 내 조직화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의 노력과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ITF는 수산물 공급망 전반에 걸친 지역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협력하는 ILO 및 기타 기관들의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이주 어업인 조직화에 대한 헌신

219. 모든 어업인은 국적이나 현재 소재지에 관계없이 정부, 사용자 및 노동자 조직으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라는 기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20. 우리는 전세계 어업인 연대의 비전과 업계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 어업인들을 집단 조직과 단체교섭 협약으로 조직하려는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한다.

221.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주 어업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단순히 항만국 내에서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권리 행사를 더 잘 보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는 이주 어업인들과 이들의 조직화를 환영하며, 어업인들의 힘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전 세계적 운동에 힘과 다양성을 더해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조직화에 관한 집행 가능한 법적 권리

222. 어업인들이 직장에서 권리를 확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업인들이 모든 기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어업인은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결사할 수 있어야 하며(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 포함), 파업권을 포함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 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부당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시위할 수 있어야 한다.

223. 전 세계의 어업인들은 정부가 법제화하고, 관련 당국이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이러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어업인들은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단체(노동조합 및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법적으로 보장된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고충 처리 절차와 구제 수단을 갖춰야 한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근거

224. 아무리 훌륭한 법적 권리와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해도, 어업인들이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 효용이 결정된다. 어업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특히 법으로 명목상 부여된 권리와 보호 조치를 국가가 제대로 이행해 주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직장에서 독립적이고 집단적인 힘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225. 어업인들이 이러한 불리한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명목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취, 학대, 위험에 처함, 차별 또는 협박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업인들이 자신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파업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26. 또한, 부당한 대우에 맞설 수 있는 산업 역량을 구축하고 발휘하는 것 외에도, 어업인들이 직장 내에서 집단적 힘을 확대하고 활용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생활과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요구를 관철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ITF는 어업인들이 더 나은 임금, 복리후생 및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이자 가장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서, 직장에서의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27. 우리는 어업인 조직화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비롯해, 업계 캠페인 중인 가맹조직들과의 연대를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또한 ITF는 강력한 단체교섭 및 수산물 공급망 협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 세계 어업인 노조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해운 및 식품 공급망 노동자들과의 연대

228. ITF는 조직화 노력을 지원하고 합동 지렛대를 개발하기 위해, 수산업 가맹조직들이 그 외의 해양, 물류, 수산업 관련 공급망 노동자들 및 노동조합들과 전국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권고한다. 우리는 국제 노동조합 연맹으로서, 가맹조직들을 통해 그리고 다른 글로벌 노동자 대표와 기구, 조직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부문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29. 우리는 식품 가공, 식품 유통, 식품 소매 및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 산업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들과 수산업 가맹조직이 국가조정위원회(NCC)가 설립된 곳에서는 이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NCC는 전국 캠페인을 조정하고, 연대를 보여주며, 어업인들을 위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다.

230. ITF 사무국은 수산분과 가맹조직들이 자체 노조를 통해 선원과 항만 노동자, 민간 항공 및 관광 노동자, 내륙항해 노동자, 도로 및 철도 운수노동자들과 집단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양자 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31. ITF는 전국적 현안에 대해 가맹 노조들을 지원하며, 가맹조직들은 현지 및 지역 차원에서 현지 상황을 바탕으로 영세 및 소규모 어업인과 그 대표 단체들과의 파트너십 및 협력의 필요성과 범위를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전략적 캠페인

232. ITF는 전략적 캠페인 활동을 중시하는 조직이다. 전략적 캠페인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자나 의사결정권자의 다양한 전략적 관계에 압력을 가하는 포괄적인 노력이다. 우리는 가맹조직들이 ITF 전략 캠페인 수립 가이드와 같은 자체 전략적 캠페인을 수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료를 제작했다. ITF는 기존의 수산업 가맹조직 및 조직 캠페인, 산업 파트너, 국제 기구, 공통의 명분을 지닌 그 외 조직들을 돕는 전략적 캠페인 활동에 전념한다.

233.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캠페인은 어업인들의 조직화와 소통, 가맹조직 및 지역 차원의 단체교섭, 그리고 어업인들을 위한 전 세계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부 및 기타 집행기관 역시 어업인들이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벌이는 캠페인으로 인한 압력에 취약하다. 이러한 압력은 긍정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효과적 집행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권리 침해나 국제적 책임 위반 사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어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 캠페인 및 협력

소통 원칙

234. 어업인에 관한, 어업인과 함께, 그리고 어업인을 위해 진행하는 소통에서, ITF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채택하여, 우리의 소통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 노동자 중심;
- 어업인 주도;
- 전략적;
- 영향력 있는;
- 민주적인;
- 정직하고 진정성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 신속하고 유연한;
- 혁신적이며, 어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서로 연결해 주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상관관계이 있는 조직화의 검증된 강점을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함.

235. 이를 위해 취할 방법은:

- 우리는 ITF 수산업 가맹조직 및 공인 어업인 조직화 및 캠페인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어업인을 넘어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와 건강한 해양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안전한 수산업 노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연대, 지지를 높이고자 한다;
- 우리는 노동자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정의와 존중, 안전, 존엄을 위해 싸우기 위해 노동자들의 힘을 키우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공유하는 연대 캠페인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연대한다.

외부 자금 조달/세계 및 지역 어업인 지원 기금

236. ITF는 필요에 따라 고위급의 승인을 받아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37. 외부 자금의 신청, 확보 및 수령에 관한 원칙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0**(외부 자금 조달 원칙/글로벌 및 지역 어업인 지원 기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록
추가 참고 자료

부록 1. ILO 어업 협약 업무 2007: 노조를 위한 지침, 2012, 개정본
https://www.itfglobal.org/en/resources/ilo-work-in-fishing-convention-guide-unions

부록 2. ITF 어선 선원 모델 기본 CBA, 2021*

부록 3. ITF 수산업 안전보건 정책, 2014년
https://www.itfglobal.org/sites/default/files/paragraph/pdf-chapters/files/2014%20ITF%20FISHERIES%20SAFETY%20AND%20HEALTH%20POLICY%201.pdf

부록 4. ITF 어업인 지원 조사단 네트워크/프레임워크, 2017*

부록 5. ILO 공동해사위원회 선원임금소위원회
https://www.ilo.org/meetings-and-events/sectorial/subcommittee-wages-seafarers-joint-maritime-commission-april-2025

부록 6. 수산물 공급망 인증 기준에 대한 ITF의 입장, 2022
https://www.itfglobal.org/en/resources/voluntary-certifications-and-standards

부록 7. ITF 포경 정책, 2022
https://www.itfglobal.org/sites/default/files/2026-06/ITF%20Whaling%20Policy_EN.pdf

부록 8. ITF 법규미준수선박 위원회 TOR*

부록 9. ITF FONC CBAs의 협상 및 승인 절차*

부록 10. 외부 자금 조달/세계 및 지역 어업인 지원 기금 원칙*

부록 11. ITF 어선 인력 운용 정책*

부록 12. 어업인 권리 네트워크*

* 참고: (*)로 표시된 일부 부록은 아직 작성 중이며, 승인되는 대로 추가될 예정이다.

WWW.ITFGLOBAL.ORG

우리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

49-60 Borough Road
London SE1 1DR
+44 (0)20 7403 2733